

**'87년 13□ 대통령 선거
장애인과의 대응**

- 전·지·대·연의 활동을 중심으로 -

평가1

신용호

(장애우 권리 문제 연구소 부장)

'87년 13대 대통령선거 장애인계의 대응

- 전·지·대·연 활동을 중심으로 -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80년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군부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는 불과 10여년 정도가 지났다. 횟수로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맞을 15대 대통령선거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 선거마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번 선거는 21

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며, 남북이 갈라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되어있는 현실을 보면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인 '87년도 부터이다.

'87년은 온 국민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거리로 모여들어 군부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통령직선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획득한 해이다. 비록 당시 11월 선거에서는 '대통령직선제'의 의미를 살릴 만한 지도자를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는 것은 현대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87년 당시 그러한 움직임들은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과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장애인이나 노동자·농민 등 소외계층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사회의 불의와 불합리에 대항에 싸워오기는 했지만 '87년 항쟁을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임들을 구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들과 싸워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지대연의 깃발 아래

'86년 당시 전국에는 약 5천여명에 가까운 지체장애인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비장애인과 당당히 경쟁하여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여전히 차별받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전지대연)라는 단일 조직을 통하여 주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처음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체육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나아가 사회 내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사회참여를 선언한다. 부산의 장애인 대학생 연합 '디딤돌' 소속 송형범 씨(부산산업대, 현 고용촉진공단 근무)를 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86년 8월말에 대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양철현(현 을지한의원원장)씨를 회장으로, 김태웅(동국대)씨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연')로 개정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속에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운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분명히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장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소외당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인식한 '전지대연'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선거'라는 공간을 통하여 장애계의 요구들을 모아가기로 결정하고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87년 대선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전지대연'에서는 10월 각 당에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전지대연'은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요구안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장애인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부재했던 각 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정의당과 신공화당은 '전지대연'의 계층간의 평등, 민주화로의 변화, 개혁이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 하에 제안을 하지 않고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과의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각 정당과 정책토론회 개최

'87년 12월 2일 전지대연은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과의 정

책토론회를 가졌다. 전지대연은 장애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악법을 철폐할 것과 장애인 등록제, 의료혜택, 편의시설, 세제혜택, 취업보장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통일민주당에서는 비록 미약한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전지대연의 입장과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과는 12월 8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평화민주당은 전지대연의 정책요구안과 비슷한 정책공약을 제시했지만 정책보다는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책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유세장에서나 공식적인 공약 자료집에 거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각 정당들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당에 공식적인 유인물로 공약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에서는 A4용지 혹은 B5용지 분량으로 내용을 만들어 주었다.

'전지대연'에서는 장애인공약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고 12월 14일에는 지하철 역(청량리, 신도림 역 등)에서 국민들에게 공약 설명서를 나누어 주며 홍보를 하였다.

12월 15일에는 그간의 정책토론회와 공약 내용을 분석하여 기호 3번인 통일민주당의 김대중후보를 공식지지하기로 결정하여 평화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21세기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결국 13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후보의 당선으로 끝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빼아픈 반성을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3대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빼앗겼던 선거권을 되돌려 받아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

를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도 선거를 이용해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나름대로의 활동들도 힘차게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13대 대통령선거는 장애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3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을 재차 확인 하는 자리였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큰 힘을 나타내지 못한 선거였다.

15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전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진정한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21세기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자기반성과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이고 단결된 힘이 요구된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기의 대응

평가2

박 옥 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92년 14대 대통령선거 장애인계의 대응'

박 옥 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92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정책 공약 사업'이라는 사업 목표와 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했던 장애인계가 만 4년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가깝게는 89년과 92년 대통령 선거 시에 장애인계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했다면,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한 과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올해의 사업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로써 대선에

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21세기 대통령'을 선출한다는데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계의 남다른 각오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말로만의 21세기가 아니다. 정확히 앞으로 3년 후, 달려오는 21세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92년 장애인계의 대통령 선거 대비 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경과 등을 보고하는 소고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이 소고를 토대로 올해 우리 장애인계가 대비할 대통령 선거의 올바른 사업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책 공약 사업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장애인계가 역점을 둔 활동은 정책 공약 사업이었다. 정책 공약 사업이라함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대중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도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이 정책을 대선 공약안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그리고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 중 공약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92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활동의 주체는 '장애인복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였다. 총 52여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전신인 인애학교사태해결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한 후 92년 3월에 출범한 장애인계 최초의 '상설 협의체'이다.

공대위는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92년 3월 12일, 92년 공대위의 사업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장애인계가 대통령 선거에 대비(이하 대선 대비

사업)하여 일련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5월 11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선 대비 사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정한 공대위는 5월 27일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선 대비 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대선 대비 사업은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가 개최될 때까지 공대위의 9차에 걸친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정해졌고, 적극적인 토론 속에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공대위는 당시 집권했던 노태우 정권이 일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여 장애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스스로가 장애인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당시 장애인계로서는 최대의 목표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대위는 장애인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4백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정했다.

1단계는 각 단위조직 및 장애 영역별로 장애인 문제와 대안을 모으고, 2단계는 대선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3단계는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확정한 후 대선공약안을 공개하고, 4단계는 이 정책 대안이 공약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유도 방안을 강구한다는 등의 단계별 사업을 결정했다.

이 단계별 사업 계획 속에는 '특정 후보 지지 불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대위는 이후 '대선 대비 소위원회' 각 단체 내 전문가를 구성하여 7월 말까지 각 단체별 장애인 문제와 대안을 취합·검토한 후, 각 영역과 부문에 걸친 전문가를 초빙, 3차에 걸친 토론 끝에 정책안을 확정했다. 대선 대비 소위원회는 21세기를 향한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 구성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와 열정적인 고민 속에서 장애인정책안을 결정한 것이다.

그해 10월, 장애인 정책안이 확정되자 공대위는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는 10월 9일 공대위 제 6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

는데, 3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안을 확정했다.

3당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따라서 공대위는 3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련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민자당 김영삼 후보는 11월 4일,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10월 19일, 국민당 정주영후보는 11월 9일에 개최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이중 김대중 후보만이 장애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했고 당시 김영삼 후보와 정주영후보가 당내 사정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유력한 3인의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공대위는 장애인 정책안 공개화를 위한 사업의 방향을 재조정 했다.

공대위는 민주당을 제외한 2당이 정책토론회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계가 소위 '표밭'이 될 수 없다는 각 당의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각 당에 장애인 정책에 관한 선진적인 공약을 마련하도록 공대위가 마련한 정책안을 각 당에 보냈다. 또한 공대위는 3정당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장애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편 공대위는 국민당 변정일 대변인이 당시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게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울러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여 정중한 사과문을 서면을 통해 전달받기도 했다.

공대위는 9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며 대선사업을 마무리 했다.

▶ '92년 공대위의 대선 대비 사업 일정별 보고 ◀

3월 12일	1차 운영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대비사업 안건이 운영위원회의에 상정 및 토론됨 • 13대 국회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특정정당 지지하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 형식적 기구로 공대위안에 정책개발소위원회를 구성하자.
5월 11일	2차 운영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발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정부가 책임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대위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대안을 내놓아 4백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하자. • 단체별 공약안을 마련하여 사무국에 제출기로 함. • 대선 대비 사업을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을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각 장애 전문영역별로 안을 수렴함. - 2단계 : 전문소위원회 구성 - 3단계 : 안을 확정한 후 정책토론회 등을 갖는다. 대선공약을 공개화 - 4단계 :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에는 공대위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27일	제 1차 대표자 회의 <p>공대위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대선대비 사업안을 공대위 92년 주요 사업으로 차택</p>
6월 9일	3차 운영위원회의 <p>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의 공동시안으로 떠오른 공동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5월 말까지 사무국에 제출기로 한 각 단체별 공약안을 한달간 늦추어 6월말까지 제출기로 했다. 7월말까지 공대위 사무국은 정리하기로 함. 이 때까지는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한국재활재단에서 정책안을 제출했음</p>
23일	4차 운영위원회의
7월 28일	5차 운영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대비 전문 소위원회에서 21세기의 장애인정책의 기본 틀 구성을 목표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함. • 유력한 3당 대선 후보와의 장애인 정책 토론회 개최하자며 기초안을 마련함
8월 25일	연사 초청 공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대위는 3당에 장애인정책토론회 개최 소식과 아울러 3당의 대통령후보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발송
9월 25일	3당 정책 토론회 일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당은 11월 4일(예정), 민주당은 10월 19일, 국민당은 11월 9일에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을 통해 밝힘.

10월 3일	기자회견 개최 •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과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발표
9일	고문, 자문, 대표자,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 대선 대비 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
12일	기자간담회 3당 대통령 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에 관한 기자간담회
21일	6차 운영위원회의 • 전문가 초빙하여 3차에 걸쳐 검토하여 확정된 정책안 보고 • '3당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 사항 보고 • 정책토론회 때 주의 사항 확정
31일	국민당과 민자당에 11월 24일이후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알림.
11월 2일	7차 운영위원회의 •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정책토론회에 대한 평가 • 김영삼, 정주영 후보와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논의
13일	국민당 정주영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림. 민자당은 아무런 소식이 없음
20일	8차 운영위원회의 • 3정당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분석 안에 관한 검토 및 확정 • 민자당: 국민당의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 보고 • 국민당: 변정일 대변인, 민자당 김득린(대선 후보 지지 연설)씨 발언에 관한 보고 : 지난 7차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의 발언한 부분에 대해 '한 정당의 대변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11월 4일 발송. 국민당은 정중한 사과문을 서면을 통해 전달. •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무산에 따라 공대위가 대책을 세움 : 민주당을 제외한 2당이 정책토론회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표밭이 될 수 없다는 각 당의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성명서, 정책토론회 보고대회. 공대위가 제안하는 축약된 장애인복지정책 등을 각당에 보내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공약안을 마련토록 한다.
23일	국민당이 정책토론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으나 이미 시기가 지나 취소함.
12월 28일	9차 운영위원회의 대선 대비 사업 평가 - 차기 정부의 복지행정에 기대하자. 또한 협조와 유대차원에서 복지행정을 기대하되 지속적으로 감시하자.

▶ '92년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토론회 내용 ◀

I. 장애인 일반 복지

1.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비장애인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공공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종의 건축물에 편의시설 및 유도시설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구상을 말씀해주십시오.

2.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텔레비전 화면에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등을 삽입하여 청각장애인용 통신 기기를 개발, 보급하고 전문수회통역인 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역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문화 환경 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도 장애부위의 기능감퇴를 예방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동등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안전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자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특수체육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의 사회재활은 관련 전문인력(재활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보육사,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육교사,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협력체계(Team Work)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 배치, 처우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각 복지시설의 예산 지원도 지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5. 최근 노성마비 장애인 최일권씨가 대전시에서 시행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무려 7번이나 불합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최일권씨는 총무처에서 시행한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결국 대전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II. 의료부분

1. 장애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경우 모자보건의 강화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장애 소인을 조기에는 발견하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장애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의 재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임신과 출산단계에서 장애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1992년부터 전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따라 출생시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같은 장애발생 예방 조치를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장애는 일반적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질병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적고, 재활의료 전문 요원의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의 조기발견에서부터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재활치료를 위하여는 각 시도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는 반드시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진료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료재활센터를 운영할 의료전문요원의 양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4.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재활센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원으로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우리나라 장애인의 80%가 보장구나 재활기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만든 보장구나 재활기기는 제작시설의 영세성과 기술의 낙후로 인해 보장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장구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 보장구는 외국인의 신체조건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인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보장구 개발과 개발된 보장구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III. 특수교육부분

1.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3만명 가량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특수교육기관이 소화할 수 있는 아동의 총 수는 1년에 1만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2만여명의 장애아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보고서(1989년)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80%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특수교육기관도 대부분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들은 도시로 유학을 가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한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으로부터 절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법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무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관계법령이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분만사고, 환경, 약물오남용, 유전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시절부터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증 등의 중증장애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를 입은 영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통하여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적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외국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기교육 현실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원에 들어가려면 한두달,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부모들이 한달에 20-30만원씩의 조기교육비를 부담하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몇 안되는 조기교육시설은 전문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활교육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조기수용형태에 머무르는 등 역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가 중증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조기요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4만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4만명의 특수교육문제에 관한 행정을 교육부의 연구사 한명이 담당하고 있어 특수교육 관련 행정체계가 매우 비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에는 적어도 과 수준의 행정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이 있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 산하기구로서 장애에 따른 적절한 교육내용의 판별 및 그에 일맞는 교육기관에의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전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특수교육관련 행정 기구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4. 장애인교육에서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학교에는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과정에 전문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성격상 별도의 직업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같이 장애인이 장애를 일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도록 하기에는 현행 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가로막는 규정을 폐지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교육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대위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귀당에 요구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IV.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기술을 습득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알맞는 직종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직업재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가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분석하고 각 직업의 종류에 따른 공정을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위와 같은 전문적 분석을 하는 기구도 없고 이에 따른 전문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문하기 때문에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또한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업재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위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업들이 장애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편견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종종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경제적 가치의 생산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장애를 입지 않은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건전한 자아를 실현해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를 '보호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경제적 가치의 생산이 강조되는 '일반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위 법률에 관한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V. 장애인 일반복지

1.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한해에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숫자가 약 3만명이라고 발표하였고 경찰청에 의하면 한해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의 숫자를 약 3만명이라고 발표하고 의료전문가들에 의하면 한해에 의료사고 및 분만과정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이 해마다 약 2만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6년에는 장애인 수가 91만6천여명이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에도 장애인의 수는 95만여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정부 내의 통계조작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귀하는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알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면 장애발생원인, 장애정도, 실태에 따른 정확한 장애인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장애인 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전문행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전문복지 행정을 위한 부서로서 '사회복지부'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의 기능 중 복지기능만을 따로 담당하는 사회복지부가 신설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부의 설치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또한 각부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보사부, 교육부, 노동부, 건설부, 교통부, 체육부 등의 정책)의 수평적 통합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상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나 또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지금과 같이 열악한 이유는 국민들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국민학교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학교 과정서부터 국정교과서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내용의 충보 및 사회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장애인복지 예산은 현재와 같은 매년 3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예산의 1% 정도가 할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예산을 전제로 합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보장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92 14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복지 공약 ◀

당구분 정책목표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백기완
장애인 장애인 전담기구 및 전달체계	장애인의 사회적응 저해요인을 대폭 개선하고 자립사업을 적극 지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건설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제도의 이념을 토대로 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예산	대통령직속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장애인·노인)대책위원회'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꾀하기 위해 '사회복지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 ● (97년도)에 '사회복지청'을 확대개편하여 '사회복지부'로 승격 ●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가칭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위조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 이후 각 시·도와 시·군 구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다룰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확립	언급없음
장애인 복지 관련예산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매년 3백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바, 점진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한다.' ● 사회복지예산도 확대하는 계획추진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 정부의 예산 운영비를 대폭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비용에 투자, 예산을 확보	민중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중 최소한 20% 이상 확보함은 물론 5년 내 30%이상 확보

- 76 -

장애인 예방 및 재활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강화 ● 위급한 산모의 응급치료 체계 확립 ● 영·유아기의 정기검진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강화 ● 모든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진 의무화 ● 실명예방 사업의 강화 ● 산업·교통안전대책의 확립 ● 의료를 요하는 모든 장애인이 적시에 적절한 일반 의료와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점차 확대 보완하고 충분한 실정 조사를 통하여 이 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실효성을 거두겠음 ● 재활의료기관 증설로 서비스 확대 ●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에 재활센터를 설치 ●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고 재활보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배치 ● 의료보험 진료일수 제한 철폐, 의료보험비, 진료비 경감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해 장애인전문병원,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와 보건지도를 손쉽게 받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문 행정책임자와 전문가, 민중이 참여하는 '장애인예방을 위한 국가위원회'설치 ● '장애인방법'을 최고 상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력 있는 장애예방 정책을 펼친다
----------------------	------	----------------------------------------------------------------------------------------------------------------------------------------------------------------------------------------------------------------------------------------------------------------------------------------------------------------------------------------------------------------------------------------------------------------------------------------------------------------------------------------------------------------------	------------------------------------------------------------	----------------------------------------------------------------------------------------------------------------------------------------------------------

- 77 -

장애인 아동의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각종 학교 입학 및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저해하는 각종법령 기타 제도를 개선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직장에 일 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장애인의 자녀학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일반 학교 교육환경 개선.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65%의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증설 ●장애인의 조기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원연령 하향조정과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입학 시 불이의 처분 없도록 함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와 직업교육 확대 ●장애인의 평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어린이의 의무교육권을 확보 ●장애인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증설과 자폐아 학급 신설 ●장애인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제정 	만 3세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의 고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직업훈련원 5개소를 확충 ●매년 1천여명의 장애인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 시킴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의무자의 범위를 20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100분의 3으로 확대하겠음 ●의무고용 이행확대를 위해 부담금, 지원금, 장려금 제도를 현실화 하겠음 ●장애인의 자영업 육성, 시각장애인의 침술기술 허용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직업훈련기관 증설 및 취업보장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인상으로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유도 ●장애인주축의 중소기업 창업 적극 지원 ●고용분담금을 활용한 장애인연금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노동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장애인직업학교' 신설 ●국·시립대학에 '장애인직종개발연구소 설립'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대폭 강화와 '장애인 집단 작업장'의 시·도별 설치 및 생산력의 국가보조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사회적응 저해요인을 개선 함 ●앞으로 건설하는 건축물, 도로, 지하철, 기타, 서비스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강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수단 제공 및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삽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TV자막,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공공편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접근을 제약하는 모든 시설을 철폐한다.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편견을 축출한다
주택보금	언급없음	공공주택 분양, 임대주택 분양시 일정비율 할애	언급없음	언급없음
장애인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인상함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 지급액을 증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장애인 보조수당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함 (10만원) ●근로불능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 ●소득이 적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제도 확대 	언급없음	언급없음
정신질환 에 대한 대책	언급없음	정신보건소에 정신질환자의 재활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대책 마련(지역 중심의 소규모 정신장애인 보건 센터 설치) ●정신장애인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함 ●정신보건법제정으로 적절한 치유환경조성으로 정신장애인 단순 치료 방지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에 정예인복지시설 부지배정 ● 중장비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면허 시험의 정예인 응시제한 제도를 수정 보완한다 ●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실시한다 ● 정예인관련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하며 국·공립 시설과 균형을 유지한다
장애인 일반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예인보장구 지원을 대폭 넓혀 나간다 ● 정예인 저립자금 웅자 대상을 94년 까지 5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웅자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함 ● 정예인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와 일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활의욕 고취, 재활사업을 적극유도 한 재활기관 구역내 정예인 복지시설의 이전·신축 가능화로 적합한 보장구 개발 ● 단기간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여 이직률 감소를 기하고 우수인력확보를 저극 추진 ● 부식비의 인상과 시설유지비의 합리적 인상 추진 ● 공공요금의 감면 범위 확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평가

장애우 권리
문제연구소

0
부
가3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평가

김 정 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새로운 가치있는 희망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복지는 다분히 경제활동의 부산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론자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고 그 결과로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결과 일정정도의 절대빈곤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무차별한 개발계획으로 환경파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복

구비용을 후세에게 넘기게 되는 무책임함을 면치못하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세대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문제가 이제는 이념적인 문제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우선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물질만능풍조가 조장되어 있어서 한탕주의와 폭력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과정의 평등은 무시당한채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오늘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우선주의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을 나열하게 된 까닭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즉 삶의 질을 생각하는 '골고루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생각해서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바램에 따라서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장지상주의'라는 괴물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장애인복지 정책의 몇가지 원칙

장애인의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그 정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세우고 그에 따른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주로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생각할 때면 수용시설이나 특수학교에서 수십명의 장애아들이 어설픈 표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하더라도 목에 풀칠할 정도라도 '보호'해주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낡은 생각은 반인권적인 상황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모형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균등한 기회부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은 인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균등을 가로막았던 요인은 사회적·물리적 장벽이었다. 이러한 장벽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그 결과 장애인들은 사회 각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구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권이 전제가 되어 다루어져야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복지를 논함에 있어 '통합'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분리고용' '분리수용' 그리고 '분리교육'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은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통해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일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사회에 있어서 보통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제활동의 참여주체이며 복지서비스의 궁극목표가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에 대해서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일반적인 정책 및 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언제나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실질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CBR),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탈수용시설화가 진전되어 지금의 대규모 장애인수용시설이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용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미 탈수용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속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되었다.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반에서 통합적인 복지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 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개인이 참석이 용이하지 않다면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 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는 정부출자기관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공공위원회와 협력하고 여러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럴때라야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것이고 그래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국가는 장애인의 생계문제, 교육, 의료서비스등의 기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민간자원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분담은 기초적 책임 이상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6) 장애인복지정책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문제는 사회적인 가치전통이나 자선에 의지하는 잠재적(潛在的)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에 의해서, 정부의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명시적(明示的)인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장애인복지정책이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될 때라야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당사자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책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3.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김영삼 정부는 첫번째 발표한 30대 정책과제에 장애인분야를 포함시킴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 정책과제중에 포함된 장애인복지정책은 '지하철 무임승차'였다. 장애인 하면 첫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임 승차'여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선심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정책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대부분 1997년 이후로 미룸으로서 다음정권에 부담을 안겨주어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장애인 종합대책, 국민복

(장애인복지법률, 전통3개년제적, 국민복지기획단, 삶의질서개혁을위한장애인종합대책,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구분	공약(92)	행정체신위원회 개선안(93)	신경제5개년 계획(93.6)	국민복지기획단 (95.12)	삶의질세계화를 위한 장애인종합대책(96.3)	국민복지추진위원회(96.5월,9월)
교육기회 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아동교육기회점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학교의 임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분교)병설(10교)모형 개발 / •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신설(9개교) / •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한 시도에 특수학교 신설(14교) / • 장애인 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확대설치(113개교) • 특수학급 증설(93~2001) -직업교육 충실히 위한 특수교육연한 연장(1~2년)(94~97)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 -특수교사양성 표준 모형개발(94~97) -통합교육여건의 완비: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아지도과목 개설, 장애 영역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편성,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 교육실시, 특수교육 자문교사 배치(94~97) -특수교육담당조직보강(9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과단위 조직설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 배치 -특수교육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 강화 : 특수교육수당인상(3만원 ~5만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호봉격차해소(94~97) -국립특수교육원설립(93) / -특수교육진흥법개정추진(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전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21개소와 특수 학급 2,220개소 증설 -장애아 조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97년까지 전용 보육시설 150개소, 2001년까지 전용유치원 100개소 설치 	
보장구 보금과 개발 장애인 범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구 지원대폭 확대 96년 2/4 부품수입 등 면세 ('94~97) -보장구 생산업체 육성·융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보장구 분기 1500명(3 억원) -재활공학사업육성: 기초 "재활공학연구소" 설치(95년상반기) -절대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구 교부확대(3천명~4천명)(93~97) -보장구 상설전시·판매장설치 및 전문지발간(94년 상반기) -재활공학사업육성: 기초 "재활공학연구소" 설치(95년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까지 재활용구의 세부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보장구를 비롯한 주요 재활용구의 범위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공학 기술개발 지원(97년까지 장애인 용로봇, 98년부터 인공관절, 의수족 등 첨보기, 인공후두 -보장구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생보자 3,000명 → 저소득층 10,000명(2000년) -97년부터 휠체어, 휠체어, 맹인용 지팡이, 보청기, 인공 후두 등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은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97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안경, 보청기, 인공후두 • 98 : 목발, 휠체어, 맹인용 지팡이 • 99 : 하지의지, 의안, 시각장애인용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기능을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 96~97년 : 장애인로봇 등 첨단보장구 개발 • 98년 이후 : 연차적으로 인공관절, 첨단의수족 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범주 확대 : 척추후만증, 왜소증,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장애, 내부장애 등 확대(94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소증, 척추기형을 자체장애에 포함하고, 민성신부전증, 만성심장질환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8년까지 마련함 		

- 90 -

영역	공약(92)	행정체신위원회 개선안(93)	신경제5개년 계획(93.6)	국민복지기획단 (95.12)	삶의질세계화를 위한 장애인종합대책(96.3)	국민복지추진위원회(96.5월,9월)
복지 서비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시설 신·증설 / 요양시설 등 : 50개 소·재활의료센타등 10개소/이용시설등 : 9개소 -시설서비스의 질개선(※국·공립시설대비 67.3%수준) /증시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12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 94: 78.5 / 95: 79.5 / 96: 89.6 / 97: 100 ※재원조달: 서울국고·지방비 각 50% /지방(국고 80%, 지방 20%) (94~97) -유료복지시설 설치근거미련(94년중) -시설의 이전 및 용지확보 : 학교의 유 휴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설치 : 기존 예산 및 국민연금기금을 우선 지원하여 97년중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300개소 설치유도 및 지원강화 -시설 : 시설의 소규모화 유도 : 5~7인 단위의 공동생활가정 설립 유도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단계적 확대 설치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 97년부터 장애인먼저운동 추진 주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추진 -장애인복지관 설립의 적정화 • 현재 장애인복지관 27개소 중 17개소가 서울에 집중 • 97년 예산지원시부터 소규모화하여 지역별로 설치토록 반영 -민간시설증시자 처우의 상향조정, 법정배치기준에 맞도록 인력확보 추진·사회복지시설운영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폐교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할 경우 시설 개보수비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홈 확대실시 -장애인유형별 프로그램 지원확대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출판사업, 맹인심부름센타운영,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능훈련등장애인유형별 특성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확대 • 특히 정신지체인을 위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확대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역 사회재활협의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지정, 재활병원과 종합재활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우선 총리훈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설치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을 신설하되 기존 2~3급의 정원내에서 조정 -소관부처의 장이 관련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대표를 적극 위촉토록 조치 	
재원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부문예산증액 : 현재 7.5%→10% 까지 낸 차적으로 확대(97년까지) -사회복지예산확보: 새로운 재원확보 및 민간인 자본을 유인하는 방안(97년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정(97년까지) 				

- 91 -

구분	공약(?)	행정체신위원회 개선안(93)	신경제5개년계획(93.6)	국민복지기획단(95.12)	삶의질의 세계화를 위한 장애인종합대책(96.3)	국민복지추진위원회('96.5월 9월)	
						복지부	노동부
취업기회의 확대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을 제기하고 정기보고 회에 “장애인고용실적” 삽입/장애인고용촉진주간근거 마련(94년)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실적” 삽입/장애인고용촉진주간근거 마련(94년) •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 확대 : 우선고용제 확대 (94-97) -장애인소규모직업훈련원 신설 주요지역에 5개소 신설 (94-97) -취업알선 체제 구축 : 공단을 97년까지 15개소 설치/주 시무소(4개소)의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및 개편방안 강구 [문집원 2명배치(97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 홍보 및 계몽활동 전개 -기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등 각종 지원확대 -장애인 적합 직종의 개발,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및 취업알선체계 확립 • 기준 장애인시설에 설비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일산장애인훈련원 확대 및 강화함. -기존 공공훈련원 일부를 장애인훈련원으로 활용 또는 신설검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재활종합센터 건립 : 96-98년 2개소(경기분당, 부산) -장애인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 -의무고용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함. -장애인이나 생산한 물품을 판매·관리하는 전문업체 (Goodwill Industry)의 설립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재활종합센터 건립 : 96-98년 2개소(경기분당, 부산) -장애인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금년말까지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직업재활시설 설치확대 유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고, 금년부터 시도별 지방 대회도 개최(개개 시·도) • 보호작업장관리운영비(월35만원)) 증액지원, 장애인생산물품 공동 판매장 설치 확대(96년 5개소→97년 7개소 : 사회복지사업기금), 장애인생산품 판매 관리 전문업체 설립 -일반작업장의 작업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강화 / 사업장당 6억원 이내 움자 및 2억원 이내 무상 지원 -취업장애인에게 1인당 500만원씩 통근차량 구입비 응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기준고용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173천원, 부담기초액의 100%) -장애인 신규고용 사업주에게 2년간 최저임금액의 80%까지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부터 장애인고용 솔선수범 -장애인복지공장에 대한 세제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 • 연계고용제 실시(96부터) -경증장애인에 대한 훈련 및 고용확대 • 공공직업전문학교(15개 지정)훈련인원의 5%선발의무화 • 민간직업훈련원과 직업재활시설종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훈련기관을 지원 • 장애인신규고용시 최저임금의 40-80%를 2년간 보조 • 기준고용률초과시 지원장려금 상향 조정(96년 173천원) • 사업체의 장비,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확대 -중증장애인훈련 및 고용기회확대 • 특수학교 직업훈련 지원(3년+1년) • 직업재활센터건립(부산, 분당) • 보호작업장의 복지공장으로의 전환 지원(매년5개소씩) • 보호작업장실태조사후 장애인에 대한 훈련경비 지급 -장애인단체에 대해 취업알선 상담소 요비용지원(5개소단체에 취업알선실적에 따라 인건비지원)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시도별로 설치 운영 -취업전산망 구축 	

- 92 -

구분	공약('92)	행정체신위원회 개선안 ('93)	신경제5개년 계획('93.6)	국민복지기획단('95.12)	삶의질의 세계화를 위한 장애인종합대책('96.3)	국민복지추진위원회 ('96.5월, 9월)
사회 환경	<p>-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화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 제정(94년 중)</p> <p>-운전면허취득차별 철폐: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시행령 45조</p> <p>-1종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완화 (94년 중)</p> <p>-지하철무임승차 실시</p> <p>-청각언어장애인 통신수단 제공 및 TV수화 통역 서비스 실시</p> <p>-학교 및 연수과정에 의한 교육: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단원 설정(94년중)/학교, 각급 연수과정에 장애인복지교양과목개설(94중)</p> <p>-수화 및 자막방송·방송에 수화 또는 폐쇄회로를 이용한 문자방송 권장(94중)</p>	<p>-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p> <p>-96년부터 모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버스 전용차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모든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배치함</p> <p>-편의시설 설치 표준(안)</p> <p>-주택구입지원: 가산점 확대(현행5점→마련(93) 10점) (94년중)</p> <p>-특소세면제범위확대 : (자동차세 포함) 중증장애인(1-3급)대리운전차량까지 확대(94-95)</p> <p>-학교 및 연수과정에 의한 교육: 등에 관한 법률 제정</p>	<p>-장애인먼저 범국민 운동 전개: 언론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순수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는 차례 양보, 장애인 채용 등 장애인먼저 시민운동 적극 지원</p> <p>-9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해 현재 각종 법령 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 부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편의화 및 지원을 확장</p> <p>-서울에서만 실시하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98년부터 시·도 별로 순회개최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p>	<p>-장애인먼저 범국민 운동 전개: 언론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순수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는 차례 양보, 장애인 채용 등 장애인먼저 시민운동 적극 지원</p> <p>-9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00년까지 이태 장애인10년 국제대회 지역 후,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이용편의를 제고</p> <p>-서울에서만 실시하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98년부터 시·도 별로 순회개최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건물 완료</p>	<p>-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p> <p>-건물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현재 전체주차대 수의 1%에서 1-3%로 확대</p> <p>-노상주차장은 1면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중)</p> <p>-부재자 신고를 하여 집에서도 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p> <p>-장애인용 공중전화 설치확대(95년 1914대→96년 2347대)</p> <p>-장애인전용 콜택시제도의 도입은 우선 어려우나 첨단무선훈련시스템 장착택시 1,500대를 금년중 시범운용(서울 지역) 후,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이용편의를 제고</p> <p>-현재 주2-3회 실시중인 TV수화자막방송을 확대할 수 있도록 9월중 하반기 정규프로그램 편성시 방송사와 협조</p> <p>-장애아동들의 캠프장소 마련</p> <p>- 수화통역사 자격제도 신설 및 의무고용제 실시(한국농아복지회에 수화통역인력 양성지원(96년 77백만원→97년 157백만원)</p>	

4.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흐름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은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정책개선안으로 청와대에 건의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1) 42종의 사업 중 예산사업이 18종, 비예산사업이 2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그 시행연도가 97년이후로 돼어 있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은 6공 때 0.14%에서 0.11%로 줄어들었다.

2) 비예산 부문 즉 제도개선에서는 많은 진전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기 위한 일정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유치, 공동체적인 복지지향 등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면서 복지책임을 될 수 있는대로 가족,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분쪽에 떠넘기려는 신보수주의적 복지관인 복지의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직업훈련사업, 자립작업장 확대, 출퇴근 차량 구입 대여금제도, 특수학교에 직업 교육 강화, 그리고 복지공장지원책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생산적 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수용시설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국가가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연계고용제나 복지공장 설립을 통해서 기업과 장애인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5) 예산편성이 여전히 수용시설에 편중되어 있다.(장애인복지예산대비 67%) 앞으로 계속해서 수용시설을 늘릴 계획이고, 2001년까지 20개의 특수학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분리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분리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김영삼정부 들어서서 눈에 띠는 부분은 기업의 참여다. 재벌기업들이 장애인복지 기관에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고, 복지공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부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고, 특수유치원 설립을 계획 등이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복지부문의 민영화가 전보다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은 현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과연 몇점을 줄 수 있을것인가. 앞서 절대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30점을 매긴다면 고개를 끄덕일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60점을 준다면 너무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항의 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은 장애인들은 뭔가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까울 것 같다.

둘째,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과거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이다.

세째,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련법, 제도의 강화로 장애인의 형식적인 사회참여기회는 넓어졌다.

네째,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용시설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이 여전하고,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교육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연계고용제도나 장애인전용 복지공장 설립 등 일반고용보다는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는 등 통합정책을 위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한 접근권 차단, 의료, 소득, 그리고 여성장애인 문제 등에서도 그렇다.

김영삼정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전보다 장애인의 교육·재활·복지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장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는 법이 바뀌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졌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피부에 와닿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단법석인 사람들은 정부와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시설·기관을 운영자들 뿐이다.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원인, 바로 오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96-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9주년 기념 심포지엄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발췌

투표 행위를 가로막는 투표소 설치

제언1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투표 행위를 가로막는 투표소 설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민원상담 사례집 (2)’ 발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의 장, 선거는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항상 가로막혀 있어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조차 소외당하게 된다.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다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홍보물,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등 장애인에게는 선거 자체가 난관이다.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채 2, 3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1층이라 하더라도

제15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대부분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 장애인이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을 조사해보니 92년의 투표소 설치보다 95년의 투표소는 2배 정도 늘어나 있었다.('선거투표소 현황' 표 참조)

또한 재가장애인에게는 부재자 투표(거신투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는지 몰라 투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투표소 현황

(단위 : 개소)

선 거 구 분	총투표소(A)	1층이 아닌 투표소(B)	비교 (B/A×100)	비 고
'91. 6. 20 지방광역의회 의원선거	15,043	1,506	10.0%	
'92. 3. 24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15,187	1,762	11.6%	1층이 아닌 투표소 2배 증가
'95. 6. 27 제1회 지방자치단체선거	17,230	3,618	20.9%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91년부터 95년까지 장애인투표편의 대책을 건의하고,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실제로 투표편의가 돼있지 않은 투표소를 설치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행위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에 일익을 하였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선거 후보자 연설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에 대한 문제점

제언2

김학영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과장)

선거 후보자 연설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에 대한 문제점

김학영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과장)

수화통역이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에 행해지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음성언어를 수화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수화를 음성언어로 건청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때마다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청각장애 유권자들은 선거 후보자들의 연설을 “수화통역”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유권자들은 청각과 언어의장애로 인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사업과 연설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권이 있어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선거 후보자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하려고 하면 다른 후보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타후보자들을 비난, 비방할 수 있다하여 거부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유세내용을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 헌법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청각장애의 이유로 하여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선거 후보자들의 연설내용과 공약사항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청각장애인들은 매 선거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 군, 구 의회 의원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시) TV나 유세장 등에서 선거 후보자들의 연설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이유는 수화통역이 없거나 수화통역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모양새 갖추기와 선거 후보자의 이미지 부각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유세장 등에서 수화통역을 할 경우 청각장애 유권자가 수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5m 이내의 거리에서 수화 식별이 가능한데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 대형 멀티비전을 통한 수화통역은 지금까지 제공된 적이 없다. TV에서는 수화와 자막을 통해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선거 후보자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캡슐모양의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어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수화통역이 간혹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도 이러한 실정이니 각 TV 방송사에 대한 불만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궐선거 때에는 아예 언급조차도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내용의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피해에 대해 청음회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관련 기관에(보건복지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수차례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수화통역 실시와 법적인 근거 마련

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소관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유세시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검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3223-144(96. 3. 18) 「제목 : 합동연설회에서의 수화통역 실시 요청에 대한 회신(제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지시)」으로 “합동연설회에서의 수화통역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고 당해 선거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화 자격증을 소지한 공정한 수화자를 선정하여 수화통역을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정 후보자의 연설시에만 수화통역을 하게 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的 내용을 회신하였지만,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여야만 수화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과 당해 선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어 해당 선거구에서 필요성의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경우와 후보자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수화통역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듯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수화통역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은 많은 차별과 소외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97. 12. 18)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경선주자 정책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많은 간담회가 각 방송사에서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TV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TV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들의 정책토론 때 단 한번이라도 수화통역이나 자막으로 방송된 적은 없다. 이것이 과연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수화통역에서 나타난 문제점」

: 모든 후보자에게 수화통역이 가능하나 수화통역자의 수화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화통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부결된 사례가 많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홍보물 기준 없다**

제언3

임 경 익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정보문화부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홍보물 기준 없다

임 경 억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정보문화부장)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차례씩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 기간에는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강 및 정견, 인적사항 등을 각종 홍보물과 자료들을 통해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6조에서는 홍보물의 법적 규격 및 제한 면수를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규정을 문자매체가 전혀 다른 점자홍보물에도 문구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홍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점자는 일반 문자와는 달리 글자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문자로 된 같은 내용을 점자로 번역해 놓을 경우 그 분량이 4배에서 7배 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이같은 묵자와 점자의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게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관련 홍보물을 아예 접할 수 없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라는 물론 투표권 행사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의 모 후보(민주당 소속)가 지역구 주민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점역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려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친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선거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았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2일 국회 사무처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6조의 개정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 내무위에 검토를 의뢰 중이다.